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2290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690,824원 및 그 중 49,492,214원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2024. 7. 2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28. 접수 제54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조영기

별지